

● 제301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21. 6. 16.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2373

I.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가.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안일 : 2021. 05. 25
- 다. 회부일 : 2021. 05. 31.

2.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및 특징

가. 세입예산

- 복지정책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5조 2,394억 7천 9백만원으로 당초보다 415억 4천 1백만원(0.8%)이 증액되었음.
- 세입 증액의 주요 원인은 정부추경에 따른 일반회계의 국고보조금의 증액으로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은 3조 5,119억 7천 3백만원에서 311억 6천 2백만원 증가(0.9%)한 3조 5,431억 3천 5백만원임.

<표> 복지정책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0예산	2021년도		증감(비율)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 계	4,968,566	5,293,479	5,251,938	41,541(0.8)	
일반회계	3,485,697	3,614,532	3,583,370	31,162(0.9)	
세외 수입	경상적	14,005	14,970	14,970	0(0)
	임시적	40,433	39,416	39,416	0(0)
	지방행정재재부과금	-	4	4	0(0)
	지방교부세	170	80	80	0(0)
	국고보조금 등	3,419,797	3,543,135	3,511,973	31,162(0.9)
	지방채	-	2,400	2,400	0(0)
	보전수입 등 및내부거래	11,293	14,527	14,527	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482,869	1,678,947	1,668,568	10,379(0.6)	
세외 수입	경상적	562	189	189	0(0)
	임시적	2,342	2,784	2,784	0(0)
	지방행정재재부과금	-	159	159	0(0)
	국고보조금 등	752,382	830,940	830,924	15(0.2)
	보전수입 등 및내부거래	727,582	844,875	834,512	10,363(1.2)

나. 세출예산

- 복지정책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8조 4,461억 7천 3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971억 2천 만원(2.3%) 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복지정책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0예산	2021년도		증감(비율)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 계	8,248,883	8,643,293	8,446,173	197,120(2.3)
행정운영경비	697	689	689	0(0)
재무활동	994,813	943,902	844,186	99,716(11.8)
사업비	7,253,373	7,698,702	7,601,298	97,404(1.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사유

- 2021회계연도 복지정책실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 등 지원과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감추경, 자체시비사업의 확대 추진을 위해 총 49개 사업 1,971억원을 추경편성을 실시하였음.
- 주요 예산으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장기휴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회복지시설 손실 일부 보전으로 34억,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지원을 위한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으로 예산 198억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이 밖에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에 따른 지원인원 증가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41억과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교대 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23억을 증액하여 제출하였음.

2 세입 및 세출 총괄

1. 세입

1) 세입예산 총괄

- 세입은 5조 2,934억 7천 9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0.8% 증가한 415억 4천 1백만원이 증액되었음. 주요 증액사유로는 국고보조금의 증액에 따름. 국고보조금의 경우 3조 5,119억 7천 3백만원에서 3조 5,431억 3천 5백만원으로 0.9% 증가하였음.

<표> 복지정책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예산	2021년도		증감(비율)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 계	4,968,566	5,293,479	5,251,938	41,541(0.8)	
일반회계	3,485,697	3,614,532	3,583,370	31,162(0.9)	
세외 수입	경상적	14,005	14,970	14,970	0(0)
	임시적	40,433	39,416	39,416	0(0)
	지방행정재재부과금	-	4	4	0(0)
	지방교부세	170	80	80	0(0)
	국고보조금 등	3,419,797	3,543,135	3,511,973	31,162(0.9)
	지방채	-	2,400	2,400	0(0)
	보전수입 등 및내부거래	11,293	14,527	14,527	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482,869	1,678,947	1,668,568	10,379(0.6)	
세외 수입	경상적	562	189	189	0(0)
	임시적	2,342	2,784	2,784	0(0)
	지방행정재재부과금	-	159	159	0(0)
	국고보조금 등	752,382	830,940	830,924	15(0.2)
	보전수입 등 및내부거래	727,582	844,875	834,512	10,363(1.2)

2. 세출

1) 세출예산 총괄

- 2021회계연도 제1회 복지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장기화 되면서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의 피해가 심각해지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편성되었음.

- 복지정책실 소관 추경안은 증액 1,993억 1천 1백만원이며, 국비 매칭 예산 324억 3천만원과 시비 예산 1,668억 8천 1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감액은 21억 9천 2백만원이며 국비 매칭 예산 12억 5천 2백만원과 시비 예산 9억 4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복지정책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추가경정 예산 요구(안)			
			감 액	%	증 액	%
계	8,643,293	8,446,173	2,192	0.026	199,311	2.4
행정운영경비	689	689	0	0	-	0
재무활동	943,902	844,186	0	0	99,716	11.8
사업비	7,698,702	7,601,298	2,192	0.029	99,595	1.3

※ 총 40개 사업 증액 1,993억 1천 1백만원 (국비 324억 3천만원, 시비 1,668억 8천 1백만원)

※ 총 9개 사업 감액 21억 9천 2백만원 (국비 12억 5천 2백만원, 시비 9억 4천만원)

- 대상사업은 증액사업 총 40건, 감액사업 9건, 1,971억 1천 9백만원으로 추경(안)의 주요사업 안은 다음과 같음.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41억 6백만원)
-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6억)
-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적립금 (578억원)
-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198억원)

-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지원 (25억 1천 4백만원)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22억 7천7백만원)
-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2억 7천만원)
-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 (42억 6천 8백만원)

<표> 복지정책실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안 부서별 추경(안)

(단위 : 백만원, %)

구분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 예산(안) (C=A+B)	증감률 (B/A)	건수
계	(×4,385,763) 8,446,173	(×31,177) 197,119	(×4,416,940) 8,643,293	2.3	49
복지정책과	(×1,504,817) 3,646,144	(×15) 112,659	(×1,504,832) 3,758,803	3.1	9
지역돌봄복지과	(×49,732) 304,552	(×△50) 21,150	(×49,682) 325,702	6.9	4
어르신복지과	(×2,255,616) 2,902,046	(×408) 3,605	(×2,256,025) 2,905,651	0.1	5
인생이모작지원과	(×79,214) 306,606	(×241) 1,597	(×79,455) 308,202	0.5	5
장애인복지정책과	(×62,902) 283,070	(×-) 3,388	(×62,902) 286,458	1.2	6
장애인자립지원과	(×345,779) 820,136	(×26,361) 48,680	(×372,140) 868,816	5.9	12
자활지원과	(×87,703) 183,620	(×4,203) 6,041	(×91,906) 189,660	3.3	8

○ 2021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제1회 추경안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복지정책실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안 세부 내역

(단위:백만원)

연 번	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A+B)	추경사유 및 산출내역
	총 계	(×4,385,763) 8,446,173	(×31,177) 197,119	(×4,416,940) 8,643,293	
	복지정책과	(×1,504,817) 3,646,144	(×15) 112,659	(×1,504,832) 3,758,803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 인력 지원사업(국비)	(×472) 943	(×△1) △1	(×471) 942	◦국비 확장내시 반영
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 12,220	(×-) 4,106	(×-) 16,326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지원인원 증가(2,333명)
3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1,578	(×-) 468	(×-) 2,046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수작업 업무 전산화 ◦개인맞춤형 '안심시스템'으로 확대 개편에 따른 상용SW 구입비
4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 41,835	(×-) 600	(×-) 42,435	◦청년희망플러스통장 가입금액 및 선발인원 확대(3천명→3천5백명)
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의료급여사업	(×829,633) 1,665,986	(×-) 10,348	(×829,633) 1,676,333	◦국비 매칭사업 - '20년 의료급여 예약금 국비 대응 시비분담액 미반영분 '21년 예약
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의료급여관리사 지원	(×1,239) 2,478	(×15) 31	(×1,254) 2,509	◦국비 확장내시 반영 - 자치구 의료급여관리사 1명 추가채용
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전출금	(×-) 830,924	(×-) 10,363	(×-) 841,288	◦'20년 의료급여 예약금 국비 대응 시비분담액 미반영분(10,348백만원) ◦의료급여관리사 국비 확장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추가교부(15백만원)
8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적립금	(×-) 12,837	(×-) 57,800	(×-) 70,637	◦재해·재난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정 적립금(26,045백만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비 소요예산 부족분 적립 (31,755백만원)
9	국고보조금 반환	(×-) 81	(×-) 28,943	(×-) 29,025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납금

연 번	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A+B)	추경사유 및 산출내역
지역돌봄복지과		(×49,732) 304,552	(×△50) 21,150	(×49,682) 325,702	
10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 1,695	(×-) 600	(×-) 2,295	◦ 복지관 긴급 기능보강사업 및 본예산 미반영 사업비 증액
11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 93,430	(×-) 800	(×-) 94,230	◦ 수영장 운영 복지관 코로나19 손실보전 - 7개 복지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른 수영장 부분운영 손실 보전
12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 13,887	(×-) 19,800	(×-) 33,687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증가 ◦ 위기가구 지원대상자 한시적 기준완화로 지원대상자 확대
13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100) 100	(×△50) △50	(×50) 50	◦ 국비 매칭사업 - '21년 행안부 공모사업에 1개 구(노원, 50백만원) 선정되어 예산 불용사유 발생
어르신복지과		(×2,255,616) 2,902,046	(×408) 3,605	(×2,256,025) 2,905,651	
14	어르신주거복지시설 운영(양로)	(×2,307) 6,112	(×△46) 110	(×2,261) 6,223	◦ 시비사업 확대추진(229백만원) - 주 52시간제 시행 대비 교대근무인력(3명) 지원 및 입소어르신 식비 1천원 증액(6개월분) ◦ 국비 변경내시 반영(△119백만원) - 주52시간제 시행 요양보호사 인력추가(18명) - 상반기 예산집행 분석을 통한 불용예상액 감액
15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1,225) 3,443	(×579) 1,029	(×1,804) 4,471	◦ 국비 변경내시 반영(1,018백만원) ◦ 시비사업 확대추진(11백만원) - 시립남부노인전문요양원 등 3개소 6개 기능보강사업 추가
16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지원	(×1,699) 20,202	(×-) 2,514	(×1,699) 22,716	◦ 시립 강동·동대문 실버케어센터 건립사업 공사 추진에 따른 소요예산 반영
17	어르신 돌봄종사자 지원	(×100) 6,143	(×△25) 100	(×75) 6,243	◦ 국비 확정내시 반영(△50백만원) ◦ 서남센터 이전 관련 리모델링비 및 임대보증금 증액(150백만원)
18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8,267) 42,437	(×△99) △148	(×28,168) 42,289	◦ 국비 확정내시 반영

연 번	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A+B)	추경사유 및 산출내역
	인생이모작지원과	(×79,214) 306,606	(×241) 1,597	(×79,455) 308,202	
19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73,885) 160,089	(×280) 608	(×74,165) 160,697	◦국비 확정내시 반영 - 사업량 확대 70,255명→70,490명
20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시직숙)	(×1,661) 5,538	(×△40) △133	(×1,622) 5,405	◦국비 확정내시 반영 - 사업량 축소 1,371명→1,346명
21	<도시개발특별회계> 50+캠퍼스 확충	(×-) 1,045	(×-) 461	(×-) 1,506	◦동부캠퍼스 감리용역 계약금 부족분 확보
22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 10,878	(×-) 204	(×-) 11,082	◦본예산 미반영 구립시설 기능보강사업 중 구비 확보사업 지원(5개 구, 6개 시설, 18개 사업)
23	국고보조금 반환	(×-) -	(×-) 457	(×-) 457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납금
	장애인복지정책과	(×62,902) 283,070	(×-) 3,388	(×62,902) 286,458	
24	탈시설 협치 추진	(×-) 1,220	(×-) 50	(×-) 1,270	◦인권침해 등 긴급한 사유로 탈시설이 필요한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 등 지원
25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 12,305	(×-) 2,277	(×-) 14,582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한 교대인력 인건비 지원(99명, 6개월분)
26	어울림플라자(가칭) 건립 및 운영	(×-) 1,521	(×-) 391	(×-) 1,912	◦하반기 본공사 착공에 따른 건축공사비 및 토목공사비
27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 30	(×-) 270	(×-) 300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소 확대 설치(15대→150대)
2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 45,367	(×-) 316	(×-) 45,683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50% 제한운영에 따른 손실 보전
29	국고보조금 반환	(×-) -	(×-) 84	(×-) 84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납금

연 번	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A+B)	추경사유 및 산출내역
	장애인자립지원과	(×345,779) 820,136	(×26,361) 48,680	(×372,140) 868,816	
30	장애이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9,937) 19,874	(×609) 1,219	(×10,546) 21,092	◦국비 확정내시 반영
31	장애부모 아동의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	(×108) 217	(×△0.4) △0.8	(×108) 216	◦국비 확정내시 반영
32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1,205) 4,016	(×△44) △148	(×1,161) 3,868	◦국비 확정내시 반영
33	장애인체육시설 운영	(×-) 4,471	(×-) 1,559	(×-) 6,031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휴관권고(20.12.5. ~'21.1.31.)에 따른 손실 보전
34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 5,723	(×) 1,107	(×) 6,830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병원폐쇄 조치에 따른 손실 보전
35	장애인활동지원 사업-활동지원급여	(×202,682) 397,766	(×22,530) 36,911	(×225,213) 434,677	◦국비 확정·변경내시 반영(35,902백만원) ◦탈시설 활동지원 시비추가사업 하반기 추진목표 100명 반영(1,009백만원)
36	장애인활동지원 사업-활동보조 가산급여	(×847) 1,453	(×746) 1,257	(×1,593) 2,710	◦국비 확정내시 및 변경내시 반영
37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	(×556) 1,132	(×△9) △19	(×557) 1,113	◦국비 확정내시 반영
38	장애인 긴급 특별돌봄 지원	(×-) -	(×2,528) 4,268	(×2,528) 4,268	◦정부 1차 추경 신설사업 확정내시 반영 - 초중고 장애학생 및 코로나19 집단감염 장애인거주시설 돌봄 지원
39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 2,893	(×-) 31	(×-) 2,924	◦업무량 과다 3개 구 센터 기술요원 3명 충원
40	<균형발전특별회계> 구립강북장애인복지관 별관 신축 건립	(×-) 552	(×-) 552	(×-) 1,105	◦본예산에 미반영된 하반기 건립공사비 반영
41	국고보조금 반환	(×-) -	(×-) 1,942	(×-) 1,942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납금

연 번	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A+B)	추경사유 및 산출내역
	자활지원과	(×87,703) 183,620	(×4,203) 6,041	(×91,906) 189,660	
42	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	(×5,274) 9,704	(×202) 303	(×5,476) 10,006	◦국비 확정내시 및 변경내시 반영 - 한시제 종사자 19명 인건비
43	자활근로사업 지원	(×66,388) 97,370	(×3,315) 4,862	(×69,704) 102,232	◦국비 변경내시 반영 - 일자리 추가 지원(11,368명→12,126명)
44	희망키움통장 I	(×1,668) 2,471	(×△31) △70	(×1,637) 2,401	◦국비 변경내시 반영 - 목표가구 수 축소(843가구→828가구)
45	희망키움통장 II	(×3,628) 6,124	(×△855) △1,448	(×2,773) 4,675	◦국비 확정내시 반영 - 목표가구 수 축소(5,835가구→4,624가구)
46	내일키움통장	(×611) 897	(×323) 474	(×934) 1,371	◦국비 변경내시 반영 - 목표가구 수(1,512가구) 대비 예산 부족분 반영
47	청년희망키움통장	(×1,303) 1,934	(×281) 390	(×1,584) 2,324	◦국비 변경내시 반영 - 목표가구 수(715가구) 대비 예산 부족분 반영
48	청년저축계좌	(×3,399) 4,999	(×967) 1,404	(×4,366) 6,403	◦국비 변경내시 반영 - 목표가구 수(2,231가구) 대비 예산 부족분 반영
49	국고보조금 반환	(×-) -	(×-) 126	(×-) 126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납금

3 사업별 검토의견

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1) 추경안 개요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은 생활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서울시의 생활여건 등을 반영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최저생계 보장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하고 있음.

- '21년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41억 6백만원을 증액한 163억 2천 6백만원이 제출되었으며, 추정 사유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추가 인원(2,333명) 지원임.

〈표〉 2021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산출내역
계	(x-) 16,326,080	(x-) 12,220,000	(x-) 4,106,080	
사무관리비	(x-) 10,000	(x-) 10,000	(x-) 0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x-) 30,000	(x-) 30,000	(x-) 0	
사회보장적 수혜금	(x-) 16,106,080	(x-) 12,000,000	(x-) 4,106,0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예산(4,106,080천원) = 2,333명(차상위 31,960명의 7.3%)×220천원×8개월 ◦ 전체 차상위계층에서 서울형 기초보장제 선정자 비율 7.3% 적용(2,333명)추계
공기관등에대 한경상적위탁 사업비	(x-) 180,000	(x-) 180,000	(x-) 0	

- '20년 대비 '21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변경사항은 소득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43%에서 45%로 상향되었으며, 모든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21년 5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이후 전면 폐지하였다는 것임. 단. 부양의무자 소득(연 1억), 재산(9억원)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됨.

〈표〉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선정기준 비교표

구분	2020년	2021년
소득기준	① 기준중위소득 43% 이하	①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재산기준	② 1억 3,500만원 이하	② 현행 유지
부양의무자 기준	③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 기준 충족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양의무자 폐지	노인·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1년 1월) 모든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1년 5월)

(2) 추경안 검토

① 지속적 불용예산 발생

- 본 사업의 '18~'20년 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18년(2.2%), '19년(26.3%), '20년(42.0%)로 불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3년간 평균 불용률은 23.5%, 불용액인 45억원이 발생하였음.
- 불용사유는 본 제도가 정부의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를 보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완화추세에 따라 이를 보완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역할이 자동적으로 축소되어 대상자가 감소한다는 것임.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는 '20년 만 75세이상 노인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1,875명을 신규 지원하였으나, 국민기초보장제도 완화 및 수급자 일제조사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1,205가구 전환 및 166가구 자격 중지 등으로 대상자 감소에 따른 예산 미집행이 발생하고 있음.

〈표〉 2018~2019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예산집행 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보조금 반납금 제외)	불용률	불용사유 및 향후대책
2018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 운영	16,463,200	16,105,604	0	357,596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용사유 : 맞춤형급여 선정기준 확대('18.10월)로 4분기 신규선정인원 감소(-58%)로 불용 ○ 향후대책: 제도개편및향후 소요예산출시오차범위줄여서집행잔액최소화
2019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 운영	18,730,755	13,805,042	0	4,925,713	2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용사유 :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완화 추세에 따라 이를 보완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역할은 축소(대상자 감소 등) ○ 향후대책: 대상자 변동 추이를 면밀히 파악하여 적정 예산 편성 및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합리적 보완모델 마련
2020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 운영	19,534,540	11,323,439	0	8,211,101	4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용사유 : 만75세이상 노인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1,875명 신규 지원하였으나, 국민기초보장제도 완화 및 수급자 일제조사로 1,205가구 전환, 166가구 중지 등 대상자 감소로 미집행. 코로나19로 민관사회복지사 합동세미나(민간소통워크숍)행사 취소 ○ 향후대책: 21년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소득기준완화와일별도가구 보장 지원 등운영 개선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 등 노력 하겠음

② 대상자 추계의 정확성

- 본 제도의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탈락자이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여부에 따라, 대상자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유동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대상자도 정확한 추계가 어려울 수 있음.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상자 선정 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하였음. 만 75세 이상 노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20.8)을 폐지하

였으며,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 개정(‘20.10) 개정(기준 중위소득 43% 이하→45% 이하) 및 노인, 한부모가구 부양의 무자 기준 폐지(‘21.1~)를 시행하였음.

- 그러나 여전히 존재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법정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였음. 이에 서울시는 선제적으로 모든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조기시행을 정부에 건의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21.2)를 완료하였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추진경과」

- 중증 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0.1~)
- 만 75세 이상 어르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0.8~)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조기시행 건의(‘20.12.31)
- 노인, 한부모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1.1~)
- 모든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완료(‘21.2.26)
- 모든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행(‘21.5~)

- 집행부는 본 제도의 21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소득기준 완화 및 별도가구 보장 지원 등 운영 개선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합리적 보완모델을 마련하여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21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목표인원을 일반가구 기준 2,333명으로 추계 하고 있는데, 본 사항이 적절한 추계 방법이며 대상자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해 관련 연구용역 결과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제도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1)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지원대상자) ①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중략 -

7. 서울형 기초보장권자. 이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권자"란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사람으로서 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20년도 75세 이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변동인원을 기준으로 산정〉

- 75세 이상가구 : 1,875명 (차상위 25,665명의 7.3%임)
 - 일반가구 : 2,333명 (차상위 31,960명의 7.3%)×220천원×6개월= 3,080백만원
- ※ 전체 차상위계층에서 서기초 선정자 비율 7.3%적용하여 일반가구 선정자수 추계

- 서울시복지재단은 현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재설계 연구'를 통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변화에 연동되는 제도로의 체계적 지원(안)을 마련하고 있음. 본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사업의 제도 개편 방향에 적절히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

(3) 소결

- 동 사업은 생활이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저소득층의 최저생계 보장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항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지원인원이 증가하여 확대하고자 제안되었음. 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취지와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 추세에 따라,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축소가 예상되며 이는 예산의 반복적인 불용과도 직결되고 있음. 그러므로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기 위한 본 제도의 취지에 따라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방식 등의 제도 설계가 필요함.
- 본 제도는 추진방법과 사업설계 과정에서 우려되는 점이 다소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즉시 보완해가며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1) 추경안 개요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는 취약계층에 대한 개인별 수요분석과 복지자원을 연계한 개인맞춤형 ‘안심 복지정보시스템’ 확대·개편에 따른 시스템 구축기반 조성을 위해 이번 추경안에서 4억 7천 만원을 증액한 20억 4천 만원이 제출되었음.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 추진내역으로는 개인맞춤형 ‘안심시스템’으로 확대·개편에 따른 상용SW 구입비(2억 9천만원) 및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수작업 업무 전산화(1억 8천만원)을 증액하는 것임.

〈표〉 2021년도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산출내역
계	(x-) 2,046,294	(x-) 1,578,294	(x-) 468,000	
사무관리비	(x-) 572,457	(x-) 284,457	(x-) 288,000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을 개인 맞춤형 ‘안심 시스템’으로 확대 개편에 따른 상용SW구입비
공공운영비	(x-) 694,052	(x-) 694,052	(x-) 0	
전산개발비	(x-) 757,424	(x-) 577,424	(x-) 180,000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을 개인 맞춤형 ‘안심 시스템’으로 확대 개편에 따른 수작업 업무의 전산화
기타자본이전	(x-) 22,361	(x-) 22,361	(x-) 0	

- 본 시스템의 '17년 4월부터 운영 개시 되었으며, 대상 업무는 자원관리 외 11종, 복지포털 등이고, 사용자는 시,구,동 보건소 공무원, 사회복지기관임. 시스템의 주요기능은 자원제공주체, 복지원, 복지욕구를 가진 대상자에 대한 관리,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어르신방문 건강 등 생활복지 대상자 등 조회 및 관리, 복지포털을 통한 복지관련 종합정보 대시민 서비스, 개인정보 오·남용 모니터링임.



〈그림〉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구성도

(2) 추경안 검토

①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미준수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확대·개편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 전 「서울특별시 정보화 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보화

사업 예산타당성 심사를 실시해야함. 하지만 본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전에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 즉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추경을 통해 예산을 먼저 편성하여 예산편성 전 사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임.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예산타당성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담당부서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서, 사업계획서, 산출내역서 등(이하 "심사요청자료"라 한다)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예산타당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 정보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정보화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제2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
2.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
3. 이미 예산에 반영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4. 예비비 사용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요청자료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과 예산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1.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2. 다른 정보화사업과의 상호연계, 공동이용 및 중복성
3. 관련 법령과 규정 준수 여부
4. 관련업무의 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및 향후 유지관리의 용이성
5.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과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③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시 내·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 그러므로 본 사업에 대한 정보화 예산타당성 심사를 먼저 실시하여 '적정' 판정 이후,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한 사업 절차라고 할 수 있음.

② 안심시스템 확대·개편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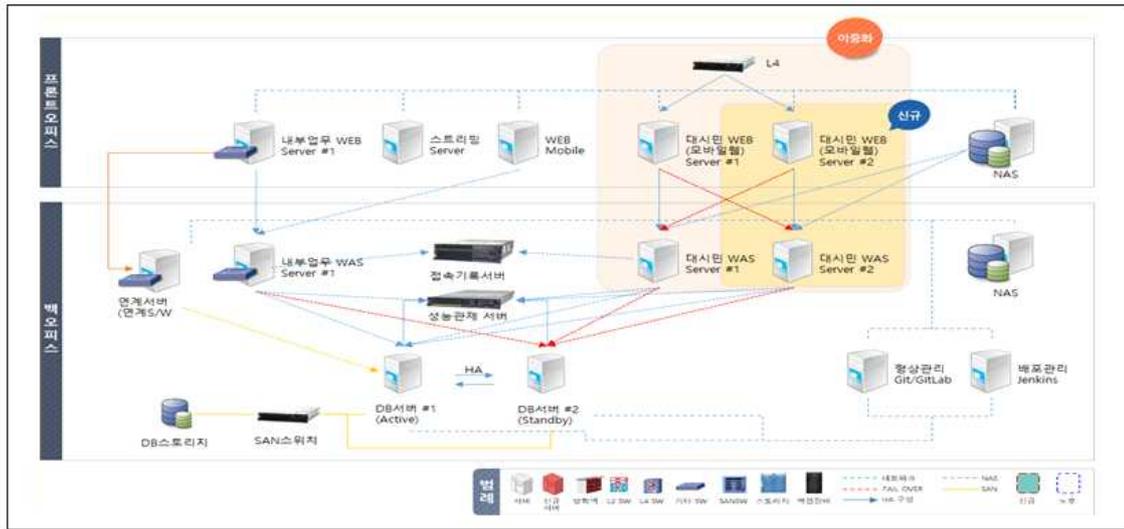
-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주요 추진 사항은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을 개인 맞춤형 '안심 복지정보시스템'으로 확대 개편하여, 수작업 처리 업무의 전산화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 신청지원 및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서버 이중화 구성하는 것임.

- 먼저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의 수작업 업무 전산화는 생활복지정보시스템 내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상담관리’ 구축을 통해 기존 신고건수, 상담 사례 등을 엑셀을 활용하여 수기로 관리하는 실적관리의 비효율성과 업무 효율성 저하를 제거하는 것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음.
- 주요기능으로는 112 신고 가정에 대한 상담일지 입력, 개인별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실적 관리, 월별 통계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가 가능하며,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도 증가할 것이라고 여겨짐.



〈그림〉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내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메뉴 구성(예시)

- 집행부는 복지포털 서버 성능부족으로 신청·접수 등 이용자 동시접속 업무에 대응이 어려워 서버 부하 가중 및 시스템 다운 현상이 발생되어, 서버 이중화를 통한 부하분산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음.



〈그림〉 안심복지정보시스템 서버 이중화 구성안

- 취약계층에 대한 개인별 수요 분석과 복지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안심복지정보시스템’ 확대·개편은 올해 시스템 구축기반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시스템 설계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임.

「안심복지정보시스템 개요」

- 사업명 : 취약계층 ‘안심 복지정보 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 '21.5 ~ '25.12 (단계별 추진)
- 주요 사업내용
 - 1단계('21.5 ~ '21.9) : 시스템 구축기반 조성
 - 2단계('21.10 ~ '22.6) : 안심 복지정보 시스템 구축
 - 차세대 행복e음 시스템 복지대상 기초정보 연계
 - 수작업으로 작업 중인 복지업무의 전산화 및 업무의 신속성·효율성 제고
 - 개인 휴대폰으로도 비대면 복지서비스 신청기능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고도화
 - 3단계('22.7 ~) : 안심 복지정보 시스템 확대·정착

- 보건복지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하고 있으며, 시스템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복지రో로 구성됨. ‘19년부터 ‘22년 까지 총 1,9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스템의 개편방향은 기존 시스템을 국민·사용자의 요구, 변화된 사회보장제도, 최신 정보 통신기술을 반영하여 전면 재구축하는 것임.²⁾
- 본 시스템 주요개편 사항은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 일선 현장의 업무부담 경감, 민-관협력을 통한 서비스 제공, 데이터기반 정책 및 사용자 편의성 강화임. 특히 ‘지자체 대상기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디지털화를 통해 서면업무를 줄이고 상담서비스 확충, 자격관리도 효율화 할 예정임.³⁾
- 그러므로 추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 지자체 대상 기능 개발 이후, 연계·제공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기능을 선별하여 시스템 개편 및 설계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소 결

- 동 사업은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을 개인맞춤형 ‘안심복지정보시스템’으로 확대·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보화 예산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사업 절차를 미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세부 사업 추진 내용의 타당성 측면에서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내 ‘위기가 정통합지원센터 상담관리’ 구축은 기존 수기기록의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2)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개발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1.1.25)

3)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개발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1.1.25)

- 또한 안심복지정보시스템 확대에 따른 이중화 서버 구축은 서버 과부하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할 것이나, 시스템 개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이 나온바 없어 면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예산 심의에 있어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더욱이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지자체 대상 기능이 구축 될 예정이므로, 본 시스템 개발 사항에 대한 확인 이후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선별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청년희망플러스 통장)

(1) 추경안 개요

-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은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산형성과 자립을 위한 사업으로 희망두배청년통장을 청년희망플러스 통장으로 변경하여 가입금액 및 선발인원(희망두배 통장 3천명 → 청년희망플러스통장 3천 5백명)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임. 기정예산 418억 3천만원 대비 6억을 증액한 424억 3천 4천만원이 제출되었음.

〈표〉 2021년도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산출내역
계	(x-) 42,434,575	(x-) 41,834,575	(x-) 600,000	
출연금	(x-) 42,434,575	(x-) 41,834,575	(x-) 600,000	◦ 가입금액 및 선발인원 확대(희망두배청년통장 3천명 → 청년희망플러스통장 3천5백명) 등에 따른 증액(600,000천원)

- 집행부는 본 사업의 추경 편성 사유를 코로나 19 영향으로 저소득 청년층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정된 자원 속에서 더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모집인원을 확대한다고 밝히고 있음. 즉 기존 '희망두배청년통장'을 '청년 희망플러스 통장'으로 확대 개편하여, 사업의 전반적인 기준을 변경하는 것임.
- 세부 변경 사항으로는 본인저축액을 10,15만원에서 10,20,30만원으로 확대하여 본인저축액의 규모를 확대하였으며, 「서울시 청년기본조례 3조(용어의 정의)⁴⁾」 개정사항('20.10.5.)을 반영하여 지원 자격을 만 18세~만 39세 까지 넓혔음.
- 또한 '20년 선발자료 분석결과, 근로소득 237만원 초과로 인한 결격사유 발생률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함을 고려하여, 지원요건을 월수입 237만원 이하에서 250만원 이하로 완화하였음. 마지막으로 기존 3,000명이었던 가입인원을 500명 증가하여 3,500명으로 확대하였음.

〈표〉 2021년 청년희망플러스통장 주요 변경사항

개선내용	2020년	2021년
통장명칭 변경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희망플러스통장
본인저축액 변경	본인저축액 10·15만원	본인저축액 10· 20·30만원
지원자격 변경	만 18세~만 34세 이하	만 18세~ 만 39세 이하
지원요건 완화	월수입 237만원 이하	월수입 250만원 이하
인원확대	3,000명	3,500명

4)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 본 사업의 목적은 학자금 대출, 주거비, 비정규직 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자립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립의욕 고취 및 빈곤층 전략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2007년 희망플러스통장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전국 최초로 도입된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 사업'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상징성과 취지는 매우 좋다고 할 수 있음.
- '15년~'20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 현황을 보면 신청 가구수 총 50,990가구, 약정가수구 총 11,049가구로 '15년 이후로 가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 경쟁률은 4.6:1, 저축 유지율은 93.5%로 사업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루었음.

〈표〉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현황('15~'20년)

구 분	모집가구	신청가구	경쟁률	약정가구	해지가구 (중도취소)	만기가구 (만기 마형)	저축중 가 구	저 축 유지율
계	11,100	50,990	4.6 : 1	11,049	719	3,000	7,330	93.5%
2020년	3,000	13,462	4.5 : 1	2,988	33	-	2,955	98.9%
2019년	3,000	15,542	5.2 : 1	2,973	187	-	2,786	93.7%
2018년	2,000	14,099	7.0 : 1	1,975	192	194	1,589	90.3%
2017년	1,100	4,227	3.8 : 1	1,097	75	1,022	-	93.2%
2016년	1,000	2,130	2.1 : 1	1,078	93	985	-	91.4%
2015년	1,000	1,530	1.5 : 1	938	139	799	-	85.2%

- 실제로 본 사업은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근로 의욕을 고취시킨다는 효과성이 인정 되어,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로 청년 자산형성 통장 사업이 확대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었음. 하지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전반적 사업기준 및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유사 청년통장 관련 비교표

구 분	청년희망플러스 통장 (서울시)	청년희망키움 (보건복지부)	청년저축계좌 (보건복지부)
시 행 시 기	2021년	2018년	2020년
'21년 모집 인원수	3,500명	209명	1,306명
가 입 대 상	만 18세 ~ 만 39세 근로청년	만 15세 ~ 만 39세 근로청년, 생계급여	만 15세~만 39세 근로청년
소 득 기 준	본인소득 250만원이하이면서 부모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저 축 목 적	주거, 교육, 창업, 결혼	탈수급	전세자금, 교육비
적 립 금 액 (지 원 액)	<u>10, 20, 30만원</u> (10, 20, 30만원)	<u>10만원</u> (최저 5만원, 최고 54만원, 평균 38만원)	<u>10만원</u> (30만원)
적 립 기 간	2, 3년	3년	3년
재 원 (국:시:구)	시비, 민간재원	국비,시비,구비 (60:28:12)	국비,시비,구비 (60:28:12)
총예산	'20년 9,843백만원 (시비8,843, 민간 1,000) ※(기존)희망두배 청년통장	2,473백만원	2,905백만원
	'21년 14,796백만원 (추경 600백만원)	1,934백만원	4,999백만원

(2) 추경안 검토

① 사업 절차상의 문제

- 본 사업의 지원요건(월 237만원→250만원) 완화를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 135% 이하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

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지원대상)(이하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함.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지원대상자) ①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제4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중략 -

8.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35% 이하이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사람으로서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하고 있는 사람

9.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사람으로서 입원·수술 등으로 고액의료비가 발생한 사람

10.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직업훈련교육이 필요한 사람

11.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출이 발생하는 중증장애인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자 중 보장시설 거주 수급자인 중증장애아동

12.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85%이하인 사람으로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례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집행부는 관련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고예고를 시행 중에 있으며, 법제심사 의뢰 및 입법안 확정방침 수립,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7월 말까지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

『서울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일정』

- 입법예고 시행(시보게재) : ~ 6.16.(20일간)
- 법제심사 의뢰 및 결과통보(← 법무담당관) : ~ 6.23.
- 입법안 확정방침(지역돌봄복지과) : ~ 7. 2.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개최(법무담당관) : ~ 7. 9.
- 개정 조례규칙 공포 : 7.29.(예정)

※ 입법예고 심사 및 사전협의, 심사결과 통보 : 4~5월 진행함

- 하지만 사업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예산을 사전에 편성한 것은 사업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음.

② 사업 확대의 기준 근거 미비

- 집행부는 본 사업의 확대 사유를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청년의 증가 및 한정된 재원 속에서 보다 많은 청년의 참여 유도라고 하고 밝히고 있으나, 사업의 변경사항인 금액(10·15만원 ⇒ 10·20·30만원), 지원요건(월 237만원 ⇒ 250만원), 모집인원(3,000명 ⇒ 3,500명)에 대한 산술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사업의 전반적인 기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 타 지자체 사례 비교 등 세부적인 검토가 먼저 선행 되고 이에 근거한 사업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확대를 추진하는 ‘서울시 청년희망플러스 통장 사업’은 타 지자체 5개 청년 통장 사업과 비교하였을 때 모집인원, 가입대상 및 납입금, 저축기간 등 모든 부문에서 큰 규모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음.

〈표〉 타 시·도 청년통장 사업과의 비교

구 분	서울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사 업 명	청년희망 플러스통장	청년노동자 통 장	청년희망 날개통장	청년희망 통 장	청년13 (일+삶)통장	청년 희망 디딤돌통장
모집인원 (’21년)	3,500명	9,000명	300명	600명	160명	1,400명
모집인원 (’20년)	3,000명	9,000명	500명	500명	160명	500명
가입대상	만18~39세	만18~34세	만15~34세	만18~39세	만19~34세	만18~39세
월 본인 납입금 (지원액)	10만원(10만원) 20만원(20만원) 30만원(30만원)	10만원 (14.2만원)	10만원 (10만원)	15만원 (15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저축기간	2년/3년	2년	3년	3년	10개월	3년
협약은행	신한은행	NH농협	부산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광주은행

- 하지만 '19년 이후로 본 사업의 경쟁률이 지속적으로 하락('18년 7.0:1 →'19년 5.2:1 → '20년 4.5:1)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양적 확대에 주력하기 보다는, 현 시점에서 사업의 세부적 사항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쟁률 현황

구 분	모집가구	신청가구	경쟁률
계	11,100	50,990	4.6 : 1
2020년	3,000	13,462	4.5 : 1
2019년	3,000	15,542	5.2 : 1
2018년	2,000	14,099	7.0 : 1
2017년	1,100	4,227	3.8 : 1
2016년	1,000	2,130	2.1 : 1
2015년	1,000	1,530	1.5 : 1

- 또한 본예산에 편성된 기존 대상(3,000명)에 500명을 추가하여 총 3,500명의 전체 사업 대상자에 대한 기준 확대를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예산 편성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볼 수 있음.

(3) 소결

- 본 사업은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립 의지를 고취시키고 빈곤층 방지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 사업의 토대가 되어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데 큰 기여를 하였음.
- 하지만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서는 사업의 전반적인 기준이 변경을 제시하고 있는데, 관련 근거 조례 시행규칙을 사전에 개정하지 않고 예산의 편성하였다는 절차상의 문제와 변경 기준에 대한 산술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은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사업의 기준 변경에 따라 전체 사업 대상자에 대한 추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현재 사업의 추진사항 및 실적에 대한 분석 후 미비점을 먼저 보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됨.

4)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

(1) 추경안 개요

-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은 장애인의 이동욕구 충족을 위해 전동보장구 충전기를 확대 설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3천만원 대비 2억 7천만원을 증액한 3억원이 제출되었음.
- 당초에는 '21년에 급속충전기 15대를 설치하고 연도별로 확대설치를 추진하고자하였으나, 자치구별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격차 완화 및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150대 조기설치를 추진하고자 증액하는 것임.

〈표〉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단위: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x-) 300,000	(x-) 30,000	(x-) 270,000	
자치단체자본보조	(x-) 300,000	(x-) 30,000	(x-) 27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별 전동보장구 충전소 설치 격차 완화를 위해 조기설치 추진 - '21년 150대 설치 목표(기정예산 : 15대 설치 예정)

(2) 추경안 검토

- 서울시에는 현재 524대의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요 설치장소는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 지하철 역사, 동주민센터 등으로 확인되었음.
- 서울시 전동보장구 이용자수가 약 12,801명인 점을 감안하면 충전기 1대당 평균 이용자 수는 24명이며, 자치구별로 설치대수 및 이용자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종로구는 전동보장구 이용자수가 143명이고 충전기 27대가 설치되어있어 1대당 이용자수가 5명인데 반하여, 양천구의 경우는 전동보장구 이용자수가 523명인데도 불구하고 5대만 설치되어 있어 1대당 이용자수가 105명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표〉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 현황

자치구	이용자 수 (명)	설치 대수 (대)	충전기 1대당 이용자 수 (명)	자치구	이용자 수 (명)	설치 대수 (대)	충전기 1대당 이용자 수 (명)
총계	12,801	524	24	서대문구	248	33	8
종로구	143	27	5	마포구	394	16	25
중구	127	9	14	양천구	523	5	105
용산구	149	18	8	강서구	1,517	31	49
성동구	277	22	13	구로구	522	13	40
광진구	265	10	27	금천구	361	12	30
동대문구	453	15	30	영등포구	365	33	11
중랑구	841	28	30	동작구	451	12	38
성북구	422	15	28	관악구	451	30	15
강북구	760	22	35	서초구	199	23	9
도봉구	454	26	17	강남구	670	24	28
노원구	1,501	43	35	송파구	579	26	22
은평구	596	21	28	강동구	533	10	53

※ 이용자 수 산출방법: 건강보험공단 및 자치구를 통해 전동보장구를 자원받은 대상자 수 (내구연한 기간, 6년)

- 이에 따라,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가 부족한 자치구에 추가 설치하여 지역별 편차를 줄이고, 전동보장구 이용 중 배터리 방전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충전환경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임.
- 다만, 전동보장구 이용자 중 18.6%가 한번 충전 후 사용 가능시간이 짧은 것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전동보장구 충전기가 독립된 장소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용자의 사생활을 방해받을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배터리를 완충한 후 외출하여도 사용 가능 시간이 짧아 장거리 이동 등에 제약이 있으며, 외출 중 배터리가 방전되어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다수 발생함.
 - 충전기의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하고 있으나, 전동보장구에 탑승한 채로 충전해야하는 이용자는 충전시간 동안 대중에 노출되어 사생활을 방해받을 우려가 있으며, 이동 동선에 충전소가 없는 경우 설치장소를 찾아가서 충전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표〉 전동보장구 사용 시 불편한 점5)

(단위:명,%)

구분	전체 (중복응답)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동보장구 조작이 어려움	19	6.6	13	8.7	6	4.0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음	37	12.8	17	11.3	20	13.3
한번 충전 후 사용 가능 시간이 짧음 (배터리 방전)	54	18.6	24	16.0	30	20.0
구입 및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듦	101	34.7	63	42.0	38	25.3
보도 표면이 불안정하고 장애물이 많음	75	25.9	32	21.3	43	28.7
기타	4	1.4	1	0.7	13	8.7
계	290	100.0	150	100.0	150	100.0

5) 자료출처 : 전동보장구 충전소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2016)

- 또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연구에서도, 외출 중 배터리 잔량 부족 시 원활할 충전을 위해서는 관공서 및 복지시설 등에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하고 반경 2~3km 마다 충전기를 설치하여 안정적으로 전동보장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급속충전기 추가 설치에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전동보장구 이용자가 충전소를 이용하는 빈도가 낮고 배터리 손상 및 보장구 고장이 염려되어 급속충전기 사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방전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충전시간이 길고 이용하기 불편한 곳에 설치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용자 의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이에 따라, 급속충전기 추가 설치 이외에도 사용시간이 긴 고효율 배터리를 지원하는 등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재 전동보장구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배터리는 납축전지로 제조원가가 낮고 대용량 제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고 중금속인 납을 사용한다는 단점이 있으며,
 - 전동보장구 사용자도 충전소 확대 설치보다는 고성능 배터리 지원 등을 통한 이동거리 향상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⁶⁾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장애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전동보장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량화, 용량증대, 충전시간 단축이 가능한 고효율 배터리 지원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6) “급속충전소 설치하는 마음에 와 닿지 않아요.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차라리 배터리 지원 금액을 올려서 좋은 배터리를 쓸 수 있게 해주면 충전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 돈으로 국산 배터리 좋은 걸 개발한다든가. 전동보장구 지원 비용을 올려 준다든지.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전동보장구 이용자 의견, 전동보장구 충전소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표〉 전동보장구 이용자 초점집단면접 주요결과7)

범주	하위범주	주요결과
전동보장구 이용 경험	전동보장구 배터리 충전 형태	- 각 가정에서 완충하여 외출하는 경우가 많음 - 부득이하게 외출 시 충전이 필요할 경우 이동용 충전기를 이용함
	전동보장구 이용 시 배터리 방전 등 사고 경험	- 외출 시 배터리가 방전 된 경우 장애인 콜택시 등을 이용함 - 배터리 방전 등 경험 후 전동보장구 이용 시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음
	전동보장구 이용 시 어려움 및 개선사항	- 사용연한이 오래된 배터리 일수록 잔량 예측이 어려워 사용이 불편함 - 전동보장구 안전 규정 마련 및 손해보험 가입 등 필요 - 수리기간 동안 임시대여 등 필요
전동보장구 급속충전소(기) 이용 경험	전동보장구 급속충전소(기) 이용 경험	- 급속충전기 이용 빈도는 매우 낮음. 실제 외출 시 급속충전이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음 - 배터리 손상 및 고장 염려로 급속충전기 이용보다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함
	전동보장구 급속충전소(기) 이용 시 어려움 및 개선사항	- 설치 위치에 대한 정보 부족 - 고장 및 관리부재로 사용하기 어려움 - 충전시간이 길고 이용하기 불편한 곳에 설치됨
전동보장구 급속충전소(기) 설치 및 운영	전동보장구 급속충전소(기) 설치 확대 필요성	- 실제 사용빈도가 낮고 배터리 손상 염려가크기 때문에 확대 필요성을 못 느낌 - 배터리 성능 향상 및 지원금 향상이 필요함
	전동보장구 급속충전소(기) 설치 적합 위치에 관한 의견	- 주민센터, 경찰서 등 공공기관 - 주요 이동경로 - 식당가, 대형쇼핑몰 등의 휴게시설 - 주요 관광지 및 공원 등
	전동보장구 급속충전소(기) 설치 거리 반경에 관한 의견	- 30분 충전으로 이동 가능한 거리마다 설치 필요 - 반경 2~3km 이내 설치하는 것이 안정적
	전동보장구 급속충전소(기) 운영에 관한 의견	- 설치와 함께 철저한 관리, 점검 필요
기타 욕구 및 제안사항	전동보장구 배터리 지원제도 개선	- 배터리 지원금액 향상 및 사용연한에 따른 지원기간 조정 필요 - 장애인 이용자의 욕구에 맞춰 배터리 질 향상 필요
	전동보장구 배터리 성능 개선 및 표준화	- 표준화된 국산 배터리 개발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 및 인증제도 도입 필요

7) 자료출처 : 전동보장구 충전소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2016)

(3) 소 결

- 장애인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는 보행 상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외출 시 사용하는 필수적인 보조기기이며, 이는 배터리를 주요 동력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동보장구에서 배터리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동 사업 추가경정예산안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를 추가 설치하여, 각 자치구별 설치 격차를 줄이고 부족한 충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인 바,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할 것임.
- 다만,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추가 설치만으로는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Ⅲ. 결론

- 복지정책실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에는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증감액과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의 지원 체계 강화에 관한 예산이 주를 이룬다고 볼 수 있음.
- 실제로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1월 이후 국민기초수급자 수를 월별로 집계한 결과, 생계급여 수급자는 1월에 124만 명이었으며, 2월 이후 매일

약 5~6천여 명이 증가하여 12월 말에 130만 명으로 증가하였음.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수급자 역시 동일한 추세로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수급자는 각각 1월에 140만 명, 169만 명에서 12월에 144만 명, 195만 명으로 증가하였음.⁸⁾ 즉 코로나 19 발생이후 빈곤층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음.

- 이처럼 코로나19 위기가 단기간에 종료되지 않고 길어지면서 경기침체와 실업자 증가는 가계소득의 감소 또는 중단 연결되고, 이는 빈곤의 증가를 의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⁹⁾, 복지정책실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코로나19 발생 이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코로나 관련한 막대한 지원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만큼 예산 편성 및 사업 수행의 적절성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는 필요하다 할 것임.
- 또한 앞으로 발생할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복지정책실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국비가 매칭 되는 다수의 사업의 경우 국비우선편성 원칙에 따라 세입이 확보되는 대로 매칭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국비보조사업의 내시, 불용이 예상되는 증액 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과성, 대상계층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일부 사업의 경우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집행의 효율성을 우선하여 다소 행정 편의적으로 편성되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할 것임.

8)~8) 정홍원 외. 코로나 이후 시대 사회보장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